

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처리기간	즉시 또는 10일 이내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	
	주소	(전화번호:)		
신청내용	면허증 발급 연월일			
	사유			

「축산법 시행규칙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제출서류	1.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: 헐어 못쓰게 된 면허증 2.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: 사유서 1부	수수료 6,000원
------	--	---------------

유의사항

해당 면허를 발급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즉시, 해당 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
(해당 지방자치단체)

처리기관
(해당 지방자치단체)

처리기관
(해당 지방자치단체)

처리기관
(해당 지방자치단체)